

_				
		보관.	$\circ$	
	_	L 14	-	 - V/L- / I
	_		11 / 1	

관리번호	W-12.1(9)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심사과, 원무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2.1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## I. 목적

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건강정보(전자, 영상, 종이 포함)의 안전한 보관, 유지 및 파기와 이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관리방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Ⅱ 적용범위

의무기록정보의 보존, 파기 및 폐기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# Ⅲ. 정의

- 1. '의무기록정보'란 의료정보와 의무기록정보를 모두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.
- 2. '보존'이란 소정의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'파기와 폐기'란 전자매체에 저장된 개인건강정보와 종이 의무기록 원본 및 개인건강정보가 기 재된 출력물, 그리고 그 사본 등을 복구 불가능 하도록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'전자매체'란 보조기억매체(디스켓, 이동식 하드디스크, CD, DVD)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 체를 말한다.

# Ⅳ. 정책

- 1. 의무기록정보의 보존기간은 의료법령에 따르며,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매년 의무기록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2. 전자의무기록은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며 백업공간을 두어 의무기록 원본이 훼손될 경우 복구 할수 있도록 한다. 백업공간으로서의 사본 저장은 정기적으로 전산실에서 시행한다.
- 3. 의무기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정보는 정하여진 안정된 장소에 보관되고 담당 직원이 관리한다.
- 4. 의무기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임상적, 업무적 및 기타 합법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의료법령에 따라 저장, 보관 또는 폐기 및 관리한다.

## V. 절차

- 1. 의무기록 보관기간
  - 1) 보관기간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
    - (1) 진료기록부 10년
    - (2) 수술기록부 10년
    - (3) 간호기록 5년



- (4) 검사 소견기록 5년
- (5)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
- (6) 환자의 명부 5년
- (7) 진단서 등 부본(진단서,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) 3년
- (8) 처방전 2년

#### 2. 전자의무기록 유지

- 1) 전자의무기록은 전산화 기억장치에 수록하여 보존할 시에는 안전하게 보관, 관리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며 정보의 누출, 변조, 훼손이 불가능하게 저장 시킨 것을 전제로(의료법 23조 2항) 별도로 출력하지 않는다.
- 2) 전자의무기록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컴퓨터 서버 및 변조 불가능한 별도의 백업서버 장치에 저 장 보관하여야 하며 의무기록 원본의 훼손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구 가능하여야 한다. 백업서버의 사본저장은 주기적으로 한다.
- 3. 안전관리(손상, 분실, 변조 예방)
  - 1) 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의무기록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충분한 보안(잠금)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.
  - 2) 화재방지를 위해 소화시설(CO2 소화기)을 갖춘다.
  - 3)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중요한 정보는 매일 실시간으로 백업을 하고 안정성을 점검한다.
  - 4) 전자의무기록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컴퓨터 서버와 변조 불가능한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·보관 하며 의무기록정보 원본에 훼손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가 가능해야 한다.
  - 5) 정보처리 장비에 저장된 정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파괴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한다.
  - 6) 의무기록정보의 수집 목적에 따른 이용이 완결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한다.
  - 7) 종이에 출력된 의무기록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문서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한다.

#### VI. 참고

- 1. 의료법 제23조
- 2.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, 제16조
- 3.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간 편, 보건복지부, 행정자치부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